

하남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1791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18. . .
제 출 자 : 하 남 시 장

1. 제안이유

- 빈곤아동이 복지·교육·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 하고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종합적인 빈곤 아동정책 수립 및 관계 기관과의 연계·조정과 상호협력을 위한 아동 빈곤예방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시장의 책무(안 제2조)
- 나. 구성·기능(안 제3조 ~ 제4조)

3. 제정조례안 : 덧붙임

4. 신구조문대비표 : 해당없음

5. 관계법령 발췌서 : 덧붙임

6. 예산수반사항 : 해당없음

7. 입법예고결과

- 가. 입법예고기간 : 2018년 10월 19일 ~ 2018년 11월 8일 (21일간)

나. 의견 내용 : 의견없음

8. 부서협의 결과

가. 규제개혁 관련협의 : 의견없음

나. 성별영향 분석평가 : 의견없음

9. 참고사항 : 해당없음

10. 관련부서 : 경기도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

하남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3항 규정에 따라 하남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시장의 책무) ① 하남시장(이하 “시장“이라 한다)은 복지·교육·문화지원 등 빈곤아동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·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빈곤아동의 안전·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빈곤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빈곤아동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3조(위원회 구성) ① 하남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, 홀수로 구성한다.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남녀의 비율을 어느 한쪽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 관련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담당업무팀장으로 한다.

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 관련 과장이 되고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.

1. 빈곤아동의 복지 및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2. 빈곤아동 지원시설의 운영자, 학부모 단체, 아동·청소년 단체 또는

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

제4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빈곤아동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
2. 빈곤아동 정책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5조(위원의 임기 및 해촉) ① 위원회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한다.

-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- ③ 시장은 위촉된 위원이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 하거나 품위손상, 그 밖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.

제6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.

-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.

제7조(수당 등)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「하남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서명		여성보육과
입 안 자	부서장 직위·성명	여성보육과장 정 향 미
	팀장 직위·성명	아동복지팀장 임 은 수
	담당자 성명·전화번호	임 은 수 (790-5847)

관계법령 발췌서

■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

제10조(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) ①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·광역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“라 한다) 및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(이하 “지역위원회“라 한다)를 둔다. 다만, 지역위원회는 그 기능의 수행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시·도 또는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역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역위원회 위원은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)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.

1. 빈곤아동의 복지 및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2. 빈곤아동 지원시설의 운영자, 학부모 단체, 아동·청소년 단체 또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

③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